

재입학에 관한 규정

- 제정 : 1999. 9. 1.
- 개정 : 2011. 6. 30.
- 개정 : 2019. 6. 18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 학칙 제16조의 3(재입학)의 규정에 의거 재입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상 및 자격) 퇴학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정상에 따라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학칙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 자에 대하여는 입학할 수 없다.

제3조(신청 및 허가) ① 재입학 지원자는 학기초 소정기간내에 재입학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재입학 신청자의 허가여부는 교무위원회의에서 심의하여 총장이 이를 허가한다.

③ 재입학은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일 학년 이하에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대하여는 전에 이수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제4조(수강신청·등록 등) ①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간내에 수강신청과 등록등 수업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또한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전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5조(준수사항) 재입학자는 학칙·시행세칙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